

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

「건축법」 제2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「경기도 건축 조례」 제26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8일

경 기 도 지 사

I. 공고개요

- 공고기간 : 2023. 05. 08.(월) ~ 06. 01.(목)
- 공고장소 : 경기도 및 시·군 홈페이지, 관련 협회 등

II. 모집기준

- 모집목적
 - 「건축법」 제27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한 건축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건축사 등재 명부 작성
- 등록자격
 - 공고일 전날('23. 5. 7.)까지 경기도에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

III. 등록신청

- 신청기간 : 2023. 06. 12.(월) ~ 06. 16.(금)
- 제출처 : 해당 권역 시·군 건축부서 ※ 사무소 소재지 기준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일 18:00 이전 도착분까지)
- 제출서류
 -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(붙임1 서식)
 -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
 - 사업자 등록증

IV. 기타 안내사항

- 업무대행건축사 세움터 서비스 신규 오픈('23.3.15.)에 따라 기존 명부 등재 건축사는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업무대행건축사 신청자는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설 신고된 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 가능합니다.

≤ 경기도 내 26개 권역 ≥

구분	권역	구분	권역
1	수원시	14	김포시
2	고양시	15	광명시
3	용인시	16	광주시
4	성남시	17	이천시
5	부천시	18	하남시
6	안산시	19	양주시
7	화성·오산시	20	안성시
8	남양주·구리시	21	포천시
9	안양·군포·의왕·과천시	22	여주시
10	평택시	23	양평군
11	의정부시	24	동두천시
12	파주시	25	가평군
13	시흥시	26	연천군

- 등재 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,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결과는 경기건축포털에 공개 예정('23. 6. 30.)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(☎031-8008-349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경기건축포털 : <https://ggarchimap.gg.go.kr/> [건축관리>자료실(건축관리)]